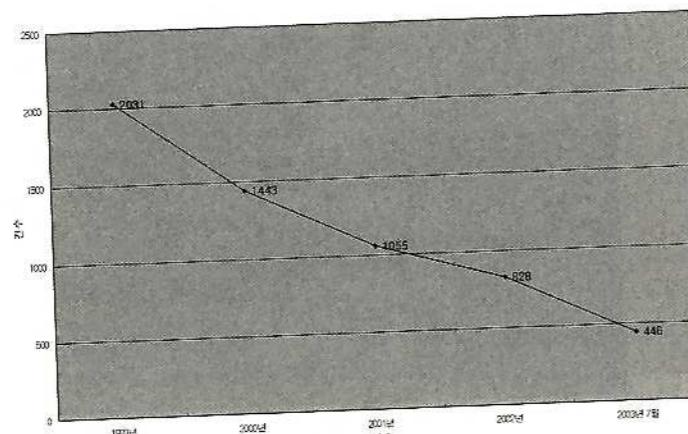


치안시책자료 ③

〈그림 III-8〉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징계추이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2) 유형별 경찰공무원 징계추이

경찰공무원의 유형별 징계추이는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2002년도에 113건, 2003년 7월에는 47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당처리는 2002년도에 42건, 2003년 7월에는 27건이다. 또한 직무태만의 경우 2002년도에 178건, 2003년 7월은 67건, 품위손상은 2002년 143건, 2003년 7월까지 8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지시위반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징계 유형으로 2002년 352건, 2003년 7월까지 224건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III-3〉에 나타나 있다.

〈표 III-3〉 유형별 경찰공무원 징계추이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1999년	251	74	669	335	702
2000년	246	89	275	193	640
2001년	98	66	219	139	533
2002년	113	42	178	143	352
2003년 7월	47	27	67	81	224

자료 : 경찰청, 2003 국정감사 자료

3) 계급별 경찰공무원 징계추이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징계추이는 다음 〈표 III-4〉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를 보면, 1999년 이후 경찰관 중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공무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찰 인력구조에서 기인한 바 일 것이다. 경찰력의 대부분은 비간부, 즉 하위직 경찰공무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징계사유가 될만한 대부분의 행위를 하위직 경찰공무원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위직 경찰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징계가 발생하고 있는 계급은 경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경사, 순경계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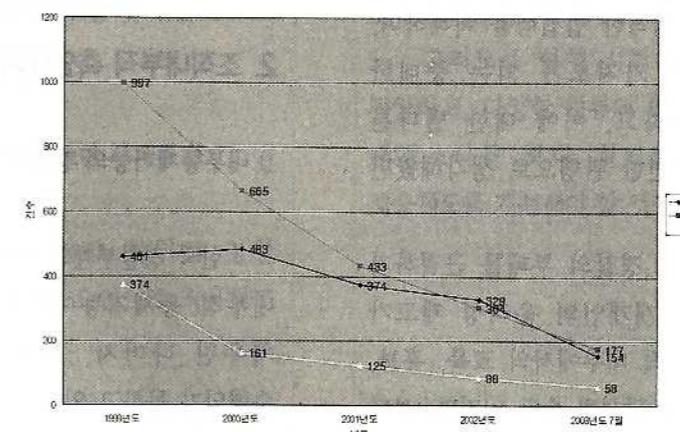
〈표 III-4〉 계급별 경찰공무원 징계추이

계급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합계
1999년	2	25	38	134	461	997	374	2,031
2000년	2	10	23	99	483	665	161	1,443
2001년	7	6	12	98	374	433	125	1,055
2002년	10	11	12	74	329	304	88	828
2003년 7월	3	6	6	42	154	177	58	446

자료 : 경찰청, 2003 국정감사자료.

이와 함께 〈그림 III-9〉는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9〉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추이



자료 : 경찰청, 2003년 국정감사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IV.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의 통제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은 개인적 측면, 조직 내부적 측면, 그리고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주요 요인에 따라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 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정노력과 윤리의식 강화

모든 분야에서의 부패가 그러하듯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있어서도 개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윤리의식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경찰은 스스로의 부패가 엄격한 법집행을 저해하며, 공권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조직 내부에서의 교육, 홍보, 또는 강제력을 통해 달성될 수도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윤리성 함양은 경찰관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낮은 책임의식과 사명감, 윤리성으로 인해 능동적인 부패방지 노력보다는 ‘사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찰기관의 수동적인 부패방지 노력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하위직 경찰관 본인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몸통과 깃털’의 논리로서, 상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비추어 자신들의 부패를 축소 또는 합리화시키는 Sykes와 Matza의 중화이론적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하위직 경찰공무원, 특히 하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근 경찰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경찰관 자체가 모든 경찰관을 대표하여 중대한 법 집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의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정노력을 강화하며, 본인 스스로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통제방안

1)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한국 경찰부패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내부적 통제기능이 지나치게 사후 적발에 치우친 나머지, 사전예방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청문감사관(실)의 경우 사전예방기능은 단순한 교양이나 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외부 혹은 내부인의 신고나 첩보 없이는 사전에 적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발자에 대한 익명성 및 신분 보장으로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비위행위의 경험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으로 재차 부패의 높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³⁵⁾

그리고 정기적인 인성검사 및 부패도 측정검사를 개발하여 이를 인사나 승진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일선경찰서 청문감사관실내 부패 사전차단을 위한 첩보수집 및 고발 담당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는 상당수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제도의 도입으로 사전에 부폐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경찰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부폐통제

경찰의 인사제도 역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사상의 문제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채용, 승진 부분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1) 경찰관 채용에 있어서의 통제방안

현재 경찰관 채용은 ‘필답식 시험’이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위주의 경찰관 채용은 해당 경찰관의 배경조사 및 인성검사를 통한 청렴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할 수 없어, ‘썩은 사과(rotten apple)’, 즉 향후 부폐행위를 저지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찰관을 선발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경찰 간부채용의 경우 경찰대학이 채용정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논조가 다르다 할 수 있지만,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주요 입직경로인 순경채용의 경우 예비 경찰관들의 인성이나 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채용제도로 인해 미래의 부폐 경찰관을 입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³⁶⁾

그러므로 현행 시험위주의 채용제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종류의 인성검사와 응시자의 배경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35) 표참원, 전계논문, 2003, pp. 192-193.

36) 현행 경찰관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필기시험(75점), 체력검사(5점), 자격증 가산점(5점), 순수 면접시험(10점)의 단계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바, 특히 면접시험의 보다는 필기시험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경찰관 승진제도에 있어서의 통제방안

승진은 경찰조직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사기제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부패의 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승진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부패 유발요인을 안고 있는바, 그것은 첫째, 승진의 불공정으로 인한 조직 내부적 부패의 유발, 둘째, 승진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조직 내, 외부적 부패의 유발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행 경찰승진제도는 심사승진, 특별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시험승진과 근속승진의 경우 별다른 부패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심사승진이나 특별승진의 경우 상급자와의 친분관계, 내·외부의 정치적 영향, 뇌물 등 내부적 부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³⁷⁾

물론 시험위주의 승진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관 승진제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심사나 특별승진에 있어 보다 확대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진심사의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승진점수의 배분에 있어 실적과 함께 윤리성, 청렴성의

비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³⁸⁾

또한 투명한 승진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다면평가제'나 '직위 공모제'와 같은 제도가 하위직 경찰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경(일반직의 9급)에서 경감(일반직의 6급에 해당)까지의 승진 연한이 평균 24년이 소요되는 등의 지나치게 더딘 승진 속도, 그리고 승진 연차의 제한에 따른 승진 기회의 부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6급에의 승진 기간이 평균 17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경찰은 이 보다 7년이나 더 소요되고 있다.³⁹⁾

이러한 점은 하위직 경찰의 사기 및 승진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부패행위, 그리고 상위직으로의 승진을 대신할 사회적 지위 상승 수단으로서의 외부의 금전적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직 경찰관들이 부패 행위 없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경찰 내부적으로 보다 승진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청렴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보여줄 때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 연차에 관련 없이

37) 심사승진의 결정요인에 대한 최종술(2000)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관들의 29%가 승진이 학연이나 지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금력 24%, 연공서열 20%, 경력 15%, 기타 4%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은 단 8%에 그치고 있다(최종술,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 정학회보, 제10권,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p. 352 참조). 이는 경찰공무원들이 실제로 승진제도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두 부패의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38) 경찰청에서는 2004년부터 경정 이상에 대한 '다면평가제'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거나, 선호도가 높은 경찰청과 서울지방청의 과·계장급 및 여타 지방청 계장급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39) 세계일보, 2003년 8월 1일자.

과감하게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3) 적정한 보수체계의 확립

처우의 개선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인 조치이다. 특히 보수는 승진 제도와 더불어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한 Merton의 'Anomie이론'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위나 경제적 수준 등의 사회적 성공지표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만, 하위직 경찰관들은 타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공'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⁰⁾

현재 경찰관들의 보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 순경 1호봉의 경우 기본급 623,800원으로 9급 일반행정직의 571,400원 보다 53,400원이 많은 수치이며, 경장 1호봉의 경우 기본급 678,00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651,600원 보다 26,400원이 많다.⁴¹⁾

그러나 업무의 위험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잦은 야간 근무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대비 보수는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 여겨진다.

또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와 보수와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계급별 보수 수준의 차이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입직경로가 다른 순경과 경위의 보수에 있어 2003년도 순경 1호봉의 기본급은 623,800원인데 반하여, 경위 1호봉의 기본급은 813,900원으로 약 20여 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⁴²⁾

이러한 보수에 있어서의 큰 격차는 하위직 경찰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부패행위의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³⁾

따라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 근절을 위한 보수적인 측면의 노력으로는 타 공무원들에 비해 업무량과 업무의 위험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수 인상이 필요하며, 경찰 내부적으로 계급간 보수 차이를 최소화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사기함양과 더불어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부패의 높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0)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공'을 '금전' 측면과 관련해 보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해 떡없이 낮은 보수수준을 보이고 있어 합법화된 수단으로는 '성공'에 접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로 2004년도 국내 10대 기업들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4,800만원 가량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으로, 정규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연봉 수준은 이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텔레콤, POSCO, 국민은행 등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들이 제출한 2003년 사업보고서상 연간 총급여액은 11조8,001억원으로 전년(11조5,041억원)에 비해 2.6% 증가,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4,813만원)과 거의 비슷한 4,810만원을 기록했다(머니투데이, 2003년 12월 30일자).

41) 위 금액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을 산정한 것이다.

42)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 2003(<http://www.kipa.re.kr/wwwroot1/ex2/intro1/page10-7.htm>).

43) 2003년도의 경찰계급별 기본급을 살펴보면, 순경(623,800원), 경장(678,000원), 경사(729,300원), 경위(813,900원), 경감(920,400원), 경정(1,071,900원), 총경(1,213,600원), 경무관(1,324,600원), 치안감(1,481,500원), 치안경감(1,659,200원) 등이다.

4) 견전한 내부문화의 확립

경찰조직의 특성상 야기되는 폐쇄성, 부패행위를 저지른 동료 혹은 상급자 및 하급자에 대한 맹목적 감싸주기 풍토, 부패의 만연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하는 풍토, 인사청탁 등을 위한 상납관행 등 경찰 문화는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내부부패를 유발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Sutherland는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위반에 호의적인 사람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비행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찰내부의 친밀 집단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패를 학습하게 되며 부패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부의 풍토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 부패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내부에서의 견전한 문화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동료나 상급자, 하급자를 떠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활발히 하며, 서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의 개념과 폐해를 철저히 교육시켜 경찰조직 내부에 반부패 정서가 파급될 수 있어야하며, 인사청탁 등에 있어서의 상납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3.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

부패방지를 위해 절실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사회전반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이다.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지만 그 이면엔 항상 부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경찰의 부패청산을 위한 사회전반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에 있어 먼저 정치권은 비리로 얼룩진 각종 정치부패를 청산해야 하고, 관료의 경우도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또한 시민들은 협연, 학연, 지연으로 얹힌 부패고리를 청산하고 법치를 우선 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들은 감시권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모든 주체들의 반부패 의식확산이 중요하며, 종래에 사소히 여겨졌던 각종 부패관련 사안들을 보다 심각히 여기고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3년 주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50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부패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특히 경찰은 부패관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여타의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부패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만연한 것은 개인적, 조직내부적, 사회구조적인 모든 측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하위직 경찰공무원은 對국민 접촉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에 연관 되기가 쉽다. 특히 하위직 경찰공무원은 각종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부패건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까지 그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위직 경찰공무원은 그들의 일반 시민과 접촉이 많은 직무상의 특징으로 인해 전 경찰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패는 경찰조직 전체의 부패로 치부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는 보다 엄중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 즉 개인적인 측면과 조직 내부적 측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통제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위직 경찰관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윤리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사제도의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방안으로는 경찰관 채용에 있어 인성검사와 배경조사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승진제도에 있어 승진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심사승진이나 특별승진에 있어 보다 확대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진심사의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과 사기증진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조직내부의 경찰문화를 보다 견전하게 이룩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경제, 관료조직,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모두의 반부패 의식강화와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03 국정감사자료, 경찰청, 2003.
- _____ 2004 경찰백서, 경찰청, 2004.
- 김 택,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1999.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4.
- 문성호, 「경찰부패에 대한 범죄학적 접근」, 「국가경영전략」2집 제1호,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2.
- 박성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윤태범, 「경찰공무원 부패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논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01.
- 이상열,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윤호, 「범죄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2.
- 최종술,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 정학회보, 제10권, 한국공안행정 정학회, 2000.
- 표창원,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과 영국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11호, 치안연구소, 1998.
- _____ 「경찰 부정부패 방지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 영국과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8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2003.
- 한국행정연구원, 「부패통제 개선방안」, 1999.
- 홍근영, 「공무원범죄론」, 서울 : 도서출판 헤르메스, 2004.

2. 국외문헌

- Holloway Brandon, "Police Corrup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Justice Studies, December, 2002.

Hagan Frank E., Introduction to Criminology: Theories, Methods, and Criminal Behavior, 5th Edition, 2002.

Roebuck J. B. & Barker T., "A Typology of Police Corruption", Social Problems, Vol 21, 1974.

Siegel Larry J.,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Wadsworth, 2001.

Newburn Tim,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Police Corruption : Lesson from the Literature",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110, 1999.

3. 신문기사

문화일보, 2003년 10월 23일자.

머니투데이, 2003년 12월 30일자.

연합뉴스, 2004년 11월 18일자.

헤럴드 경제, 2004년 6월 17일자.

조선일보, 2004년 8월 18일자.

4. 인터넷(URL)

http://www.silvernet.ne.kr/journal/culture_read.

<http://elpf.kiep.go.kr/project/LstNews.nsf>.

<http://www.kipa.re.kr/wwwroot1/ex2/intro1/page10-7.htm>.

<http://dic.naver.com/search.naver?where=dic&query=%BA%CE%C1%A4%BA%CE%C6%D0&hw=1>.

치안시책자료 4



경찰 ITS 추진현황 및 제언

■ 정 초 영*

I. 서언

1990년대 초반 첨단교통체계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단계별 ITS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S 추진전략 1단계(2001년~2005년)의 후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지능형 교통체계와 관련된 관련기술의 개발, 통행자와 교통시설 운영자의 수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관련 기술의 개발, 전문성의 확보, 추진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 등의 문제 산적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첨단교통 체계에 대한 시설 운영자와 통행자의 욕구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교통체계에 대한 첨단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급변하는 교통수요 패턴과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새로운

교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교통전략의 모색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기술 개발과 첨단화의 진전 상황은 첨단교통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한층 가속화 하고 있다.

최근 2004. 10. 19일~24일(5일간)까지 일본의 나고야에서 제 11회 ITS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ITS분야의 세계최대 전시회로 각국의 ITS 기관과 기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ITS 정책과 관련 솔루션 등을 전시하고 기술 콘포런스를 진행한다. 일본은 도요타 등 자동차업체와 소니 등 주요 전자업체, ITS 관련기관 등이 ITS관련 비전과 청사진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안양시와 제주시, 한국도로공사, 텔레메티кс 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소 ITS전문업체들이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주요 자동차업체 및 전자업체의 참석이 없었다.”

*치안연구소 연구관

1) 디지털타임스 2004. 10. 22

또한 국내에서도 ITS 관련 대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ITS분야의 시장규모와 투자재원의 막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 보여진다.

경찰은 ITS분야에서 중요하고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교통관리최적화 분야의 주요 추진주체이다. 그리고 현재 7개 ITS서비스 분야중 직접 대국민 교통생활에 밀접한 교통신호 및 교통단속 분야에 중점 추진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시스템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의 도입 및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ITS에 일반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의 ITS기본계획, 국가기본계획에서 차지하는 경찰의 분야별 시스템, 경찰의 ITS 구현노력, 경찰 ITS 추진관련 몇가지 제언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한다.

I. ITS 일반

1. ITS의 정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기존의 교통시스템에서 한계로 여겨지는 교통사고의 위험,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통행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교통시스템을 말한다.²⁾

즉 ITS란 교통, 전자,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가능케 하며, 안전한 자동운전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2. ITS의 도입배경

전통적인 교통문제의 해결방법에는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법, 교통수요를 조정하는 방법과 교통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이 있다. 초기에는 교통수요를 조정하거나 교통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그 후 교통시설의 확충만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파악되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교통수요를 조정하는 방법이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교통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눈을 돌린 것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신기술은 정보, 통신, 전자, 기계 분야에 특히 집중되었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신기술은 국가와 지역여건에 따라

2) 원제무 외, 첨단교통론, 한울아카데미, 2003, p.17

다양한 적용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3. ITS의 주요 서비스 구성

기존 교통시스템은 교통시설 이용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진 않은 비교적 고정적인 시스템이다.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매우 제한적이고 유동적인 교통여건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것도 비효율적 활용을 불가피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ITS는 교통시장의 골격을 교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유동적인 체계로 변화시킨다. 도입 초기에는 서비스의 제공자의 관점에서만 ITS 시장이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가지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논의되었다.

1)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TMS는 도로상의 교통류 관리, 돌발상황 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모든 교통상황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상의 교통류를 관리하고 교통혼잡을 예측하여, 각 차량에게 대체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기능이다. 이러한 ATMS를 구성하는 주요서비스로는 도시교통관리 시스템,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교통수요관리, 자동통행료 징수 시스템, 자동교통단속 시스템 등이 있다.

2) 첨단 여행자정보 시스템(ATIS :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ATIS는 통행자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교통여건에 대한 정보, 새로운 교통경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 TV, 라디오 또는 컴퓨터 등의 수단과 차량안에 내장된 상황판 등을 통하여 가정, 사무실, 학교와 같은 고정공간뿐만 아니라 차량안과 같은 이동 공간에서도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교통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여행자정보 시스템, 주차정보 시스템, 동적경로 안내 시스템 등이 있다.

3) 첨단 차량제어 시스템(AVCS : Advanced Vehicle Control System)

AVCS는 운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내장된 장치가 운전자를 제어하는 것으로, 충돌우려가 있을

때 주의 경보를 줄 수 있고, 속도조절을 하여 사고방지 및 사고로 인한 지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술향상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제어되고 자동제어 도로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이에 관한 자동운행 속도장치, 사고경보장치, 자동정지 장치, 차선 변경 경보장치, 등의 개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PTS는 자동차량위치파악장치(AVL)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자에게 대중교통 운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운영자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와 노선상의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5) 화물차량 운영(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CVO는 화물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화물차량이 아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AVL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자동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과적과 같은

안전저해요인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운용과 관련되어 하물운송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5가지의 구성체계는 ITS의 시장수요와 기술개발에 따라 전자 지불, 보행자 지원, 비상관리 등과 같이 한층 특화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분류사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변화는, 필요한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른 ITS 시스템 구성이 나타난다.

II. 우리나라의 ITS 기본계획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4월부터 ITS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997년에는 'ITS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국내 ITS 구축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ITS 구현을 위해 기본계획의 개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2월에 기본계획을 개정했고, 2001년 3월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1'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기본방향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성,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기반조성사업

추진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부담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1. ITS의 구성³⁾

ITS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ITS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이용자들의 요구충족을 위해 ITS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7개 서비스분야, 18개 서비스, 62개 단위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는 ITS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다만 새로운 교통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누적적으로 새로운 단위서비스의 발굴과 추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교통관리 최적화 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1) 교통관리	1) 실시간 교통제어, 2) 고속도로교통류제어 3) 광역교통제어, 4) 교통제어정보제공
(2) 돌발상황관리	5) 돌발상황 감지, 6) 돌발상황 대응조치, 7) 긴급차량운행관리자원
(3) 자동교통단속	8) 속도위반차량 단속, 9) 전용차로 위반차량단속 10) 차선위반차량 단속, 11) 신호위반차량단속, 12) 과적차량단속
(4) 교통공해 관리지원	13) 교통공해 관리지원
(5) 교통시설관리지원	14) 교통시설유지, 관리, 운영지원

2)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6) 교통료 전자지불	15) 유료도로 통화로 전자지불, 16) 혼잡통행로 전자지불
(7) 요금 전자 지불	17) 대중교통 요금 전자 지불, 18) 주차요금 전자지불

3) 교통정보 유통활성화 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8) 기본 교통 정보 제공	19) 기본 교통 정보 제공
(9) 교통정보관리, 연계	20) 교통 정보 관리·연계

3) 건설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1, 2000.

4) 여행자정보 고급화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10) 차량여행자 부가정보 제공	21) 여행자 정보 제공, 22) 출발전 여행 정보 제공, 23) 운전중 교통정보 제공, 24) 주행안내, 25) 주차정보 제공
(11) 비차량 여행자 부가정보 제공	26) 보행자 경로 제공, 27) 자전거 경로 안내, 28) 장애자 경로 안내, 29) 기타 부가정보 제공

5)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12) 대중교통정보 제공	30) 시내버스 정보 제공 31) 고속버스정보 제공, 32) 시외버스정보 제공 33) 시내버스 운행관리 34) 고속버스운행관리 35) 시외버스운행관리 36) 좌석예약관리
(13) 대중교통관리	37) 환승요금관리 38) 대중교통안전관리 39) 대중교통시설관리

6) 화물운송 효율화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14) 물류정보관리	40) 화물추적관리 41) 화물차량운행관리 42) 화물차량안전관리지원 43) 화물차량경로안내
(15) 위험물차량관리	44) 위험물사고처리 45) 위험물관리 46) 위험물차량 경로안내, 관리
(16) 화물전자행정	47) 화물전자통관 48) 화물전자행정

7) 차량·도로 첨단화 서비스 분야

서 비 스	단 위 서 비 스
(17) 안전운행 지원	49) 사고발생자동경보 50) 차량전후방충돌예방 51) 차량측방충돌예방 52) 교차로충돌예방 53) 철도건널목안전관리 54) 감속도로구간안전관리
	55) 차량안전자동차 56) 보행자안전지원 57) 장애자안전지원 58) 운전자시계항상
	59) 위험운전방지
(18) 자동운전지원	60) 차량간격제어 61) 자동조향운전 62) 군집운행

2. 시스템 체계 및 추진주체

각 단위시스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스템별 사업추진 주체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각 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치안시책자료 4

- 건설교통부 : 법과 제도의 제정·운영 및 전체사업의 총괄·조정, 연구개발, 국제협력, 표준연구·제정, 산업육성 등 기반조성, 소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보통신부 : 통신·방송망 활용계획 수립 및 관련표준 연구·제정, 장기적인 전용통신망 구축 방향 설정 및 구축, ITS 관련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지원
- 산업자원부 : 첨단차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표준 연구·제정, 국제표준과 연계한 국가표준의 연구·제정, ITS산업의 육성·지원
- 과학기술부 : ITS 관련 기반 기술 연구개발·지원
- 행정자치부 : 지자체 ITS 사업의 지원·조장
- 경찰청 :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및 단속 관련 서비스 제공
- 지자체 : 도시교통관리 등 소관 서비스 제공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관련 ITS 사업계획 수립·추진

구체적인 서비스 분야별 추진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리 최적화 서비스 분야

단위시스템	관련 주체		관리 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	경찰청지자체	-	시	일반국도(도시부) 지방도(도시부) 시도	도시간선도로의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처리 및 교통신호제어
도시부간선도로 우선처리 제어	경찰청지자체	-	시	일반국도(도시부) 지방도(도시부) 시도	우선처리차량을 검지하여 우선처리 신호제어를 수행
도시부간선도로 가변차로제어	경찰청지자체	-	시	일반국도(도시부) 지방도(도시부) 시도	도시부내의 가변차로 도로에 대한 실시간 제어
도시부광역교통 신호제어	경찰청지자체	-	시	일반국도(도시부) 지방도(도시부) 시도	도시부 전체의 유입·유출등의 광역적 교통류를 제어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정보제공	경찰청지자체	-	-	일반국도(도시부) 지방도(도시부) 시도	도시부 간선도로의 교통정보를 신호제어센터로부터 받아서 가공 후 제공

단위시스템	관련 주체		관리 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도시부간선도로 돌발상황 관리	경찰청 지자체	119구조대, 응급구조단, 민간견인업체	시	일반국도(도시부) 지방도(도시부) 시도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검지·확인·처리
도시고속 도로교통관리	경찰청 지자체	-	시	시도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와 관련된 기본교통정보를 수집·가공, 저장하여 도로이용자와 권역정보센터에 전달하는 기능수행
도시고속도로 교통류제어/연계	경찰청 지자체	-	시	시도(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의 램프, 차로, 다인승차량 제어 및 정보수집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타 시스템과 연계제어
도시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	경찰청 지자체	119구조대, 응급구조단, 민간견인업체	시	시도(고속도로 도로)	도시부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을 검지·확인 및 처리하며 돌발상황정보를 TRS와 도로이용자에게 전달
고속도로 교통관리	한국도로공사	-	권역	고속도로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기본교통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며, 전방향 교통상황을 안내
	건교부			일반국도(자동차전 용도로)	
	지자체			지방도(자동차전용 도로)	
고속도로 교통류제어/연계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권역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차로, 램프제어, 다인승차량 전용도로를 관리하여 다른 유형의 도로 및 관련서비스시스템과 연계기능 수행
	건교부			일반국도(자동차전 용도로)	
	지자체			지방도(자동차전용 도로)	
고속도로 돌발상황 관리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119구조대, 응급구조단	권역	고속도로	고속도로상에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검지·확인하여 처리하여 관련서비스시스템과 연계기능 수행
	건교부			일반국도(자동차전 용도로)	
	지자체			지방도(자동차전용 도로)	
국도/지방도 교통신호 제어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	권역	일반국도 지방도	국도상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각종교통신호기를 제어
국도/지방도 우선처리 제어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	권역	일반국도 지방도	국도내 가변차로의 가변차로신호제어기를 교통상황에 따라 실시간 제어

단위시스템	관련 주체		관리 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국도/지방도 교통정보제공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	권역	일반국도 지방도	도로 및 교통상황정보, 대체도로 안내, 돌발상황정보 제공, 전방향 도로 및 차로 폐쇄정보 등 제어성 교통 정보 제공
국도/지방도 돌발상황 관리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지자체, 119구조대, 응급구조단, 민간견인업체	권역	일반국도 지방도	국도상에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검지·확인하여 처리하며 관련서비스체계와 연계가능
속도위반 단속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지자체	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시도	도로상의 속도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고 조치
신호위반단속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지자체	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시도	도로상의 신호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고 조치
차로/차선 위반단속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지자체	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시도	도로상의 차선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고 조치
증차량관리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지자체	경찰청	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시도	도로상에서 과적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기능 수행

2)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분야

단위시스템	관련 주체		관리 영역		설명
	추진	협조	공간	도로	
자동요금 징수	한국도로공사(민간)	건교부	전국 또는 전역	고속도로	특정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
	건교부(민간)			일반국도	
	지자체(민간)			지방도	
	지자체(민간)			시도	
대중교통 요금징수	시내버스회사 지하철/도시 철도공사 철도청 기타 대중교통회사	건교부(민간)	시	시도	대중교통수단간 통합된 환승요금을 징수·관리하는 시스템

3) 교통정보 유통 활성화 서비스 분야

단위시스템	관련 주체		관리 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권역 교통정보센터 서브시스템	준공공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정통구, 기상청, 환경부, 철도청,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민간여행사, 해운터미널 민간	권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권역내 모든 교통 및 여행관련 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하여 이를 부가구조적 모든 서비스체계들에 공급하는 서브시스템
기본정보제공 서브시스템	준공공	건교부, 정통부, 민간서비스업체	권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개인단말장치나 공중단말장치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교통정보 서비스

4) 여행자 정보 고급화 서비스 분야

단위시스템	관련 주체		관리 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출발전 교통정보 안내	민간	권역교통 정보센터	권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공중단말장치나 개인 단말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교통, 업무, 여행관련의 편의정보 및 여행경로를 제공
운전중 교통정보 제공	민간	권역교통 정보센터	권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차량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교통 정보 서비스
동적주행안내	민간	권역교통 정보센터	권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실시간 교통정보에 기초한 운행중 주행안내

5) 대중교통서비스분야

단위시스템	관련주체		관리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시내버스정보	지자체, 버스회사조합	정통부 한국통신	시	시도	시내버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대기승객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시스템
시내버스운행관리	시내버스회사(조합)	지자체, 119, 129구조대	시	시도	시내버스 운행 상태파악 및 조정, 운전자관리 등 운행관리를 첨단화 하는 시스템
버스전용차로관리	지자체	경찰청	시	시도	버스전용차선의 단속 및 관리, 위반차량의 관리를 첨단화하는 시스템
고속버스정보	고속버스회사(조합)	건교부, 도로공사, 터미널 관리법인	전국	고속국도	고속버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승객과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시스템
고속버스운행관리	고속버스회사(조합)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고속버스의 운행 상태파악 및 조정, 운전자 관리 등 전체적인 운행관리를 첨단화하는 시스템
고속버스좌석예약	고속버스회사(조합)	건교부	권역(조합),	고속국도	고속버스의 좌석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시외버스정보	광역지자체	시외버스회사(조합)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시외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터미널 이용자 (대기승객, 미증객), 정류장 대기승객, 차내승객, 버스운전자 등에게 안내전광판, 단말기, PC통신, Internet,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제공
시외버스운행관리	광역지자체별 버스회사	시외버스회사(조합)	시외버스회사(조합)	일반국도 지방도시·군도	시외버스에 각종 첨단장비를 설치, 생성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외버스 운행관리

6) 화물운송 효율화서비스분야

단위시스템	관련주체		관리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화물차운행관리 (CVOMS)	민간	건교부 운송관련 기관	전국	-	실시간 차량위치 추적 및 위치정보 제공
화물차량관리 (CVOMS)	민간	건교부 운송관련 기관	전국	-	차량의 운행기록 및 화물차량 관리에 관련 정보 제공
화물관리 서비스 (FMS)	민간	건교부 운송관련 기관	전국	-	화물실적, 화물량 등 화물관련 각종 통계 및 정보 제공, 화물의 실시간 추적 제공
화물전자통관 (CECS)	관세청	산자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단위 건역	-	수출입 화물의 온라인 통관처리 서비스 제공
화물행정 (CVAS)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운송관련 기관	전국	-	화주, 운송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류의 온라인 처리, 세금 및 공납금 관련 정보와 면허, 사업허가, 세금관련 정보 및 온라인 등록
위험물 차량 관리 (HMMS)	건교부	행자부, 경찰청 환경부, 구조대 운송관련기관	전국	-	위험물차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노선 및 돌발상황 정보 제공, 위험물 처리

7) 차량·도로 첨단화 서비스분야

단위시스템	관련주체		관리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운전자 시계항상 (DVE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아간주행, 상불량 등 운전자의 우행을 방해하는 상황에 운전자가 정상적인 인지, 판단, 조작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계를 항상시킬수 있는 서비스 제공
운전자 운전형태 감지경고(DBMW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운전자의 운전형태를 감시하여 운전자의 운전상태 이상시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서 사고 방지

치안시책자료 4

단위시스템	관련주체		관리영역		설명
	추진	협조	영역별	도로별	
차량안전 자동진단 (AVSC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차량에 장착된 센서가 차량상태를 감지하고 차량이상시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서 사고 방지 및 차량파손 방지
전후방 안전경고 (LOSW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차량의 전후방 상태를 감지하여 전후방 충돌위험 발생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전후방 충돌 및 추돌사고 방지
전후방 안전제어 (LOSAC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차량의 충방상태를 감지하여 장애물 도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시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서 전후방 충돌 및 추돌방지 제공
측면 안전경고 (LASW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차량의 충방상태를 감지하여 장애물 도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시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서 전후방 충돌 및 추돌방지 제공
측면안전제어 (LASAC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주행중 충방의 장애물이나 다른차량과의 충돌사고 위험 발생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차선이탈 및 충돌충돌사고를 방지
차량간격 자동제어 (AHCS)	자동차 회사(완성차/부품업 계) 산업자원부	건교부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주행중 차량의 적정속도와 차두간격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도로의 용량을 증대시고 전후방 충돌사고를 방지

3. 국가 ITS 추진 전략 및 조직체계⁴⁾

2)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로 국가교통위원회 산하에 총괄분과와 주요분야별
분과위원회(표준분과, 광역분과, 연구개발분과,
산업화분과, 정보통신분과, 지자체 협의체)로
구성된 ITS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ITS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설정은 중앙
부처는 관련부처별로 ITS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교부에는 ITS기획단 설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ITS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ITS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민간은 ITS Korea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 추진한다.

1) 단계별 추진전략

(1) 1단계(2001년~2005년):

사업추진기반 조성 및 기초서비스 제공

표준을 제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한다. 기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초단위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2단계(2006년~2010년): 성장·확산단계

1단계에서 제공한 서비스와 연구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점단차량·도로
서비스는 시범서비스 및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3) 3단계(2011년~2020년): 성숙·고급화 단계

기 제공한 단위서비스를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교통여건에 따라 개선·보완한다.
자동주행이 가능한 차량·도로첨단화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한다.

III. 국가 ITS 추진을 위한 경찰의 역할

1. ITS 서비스 제공

1)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분야

도시부 간선도로(교통신호제어, 우선
처리제어, 가변차로제어,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시스템), 도시부 광역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 교통류 제어·
연계, 돌발상황관리 시스템), 국도·지방도

4) 건설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1, 2000.

(교통신호제어, 우선처리제어, 가변차로 제어,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시스템), 속도 위반단속 시스템, 신호위반단속 시스템, 차로 차선위반단속 시스템에 대해 지방경찰청 단독 또는 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추진한다.

고속도로(교통류제어, 돌발상황관리 시스템), 중차량 관리 시스템은 해당추진주체의 추진에 협조한다.

2) 교통정보 유통활성화 서비스분야

권역 교통정보센타 시스템은 설립될 준공공기관의 서비스 추진에 협조한다.

3) 화물운송 효율화 서비스분야

위험물차량관리 시스템의 건설교통부 서비스 추진에 협조한다.

4)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 분야

교차로 진입 차내 경고, 교차로 진입 제어 시스템은 지방경찰청이 해당부서와 공동 추진하며, 철길 건널목 진입 차내 경고, 철길건널목 진입제어 시스템은 해당부처의 서비스 추진에 협조한다.

2. 연구개발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및 단속서비스 관련기술 개발

3. 표준제정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및 단속관련 표준 개발

4. 기타

홍보, 국제협력, 산업활성화 및 사업관리·시설운영 등에 타 정부부처와 공동참여

IV. 경찰의 ITS 추진 현황 및 과제

1. 경찰 ITS 추진현황

1) ITS 서비스 관련 시스템

경찰에서 추진중인 ITS 관련 시스템은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교통정보센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1)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199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해마다 지속적인 추가설치를 하여 2003년 12월 현재 고정식 2,188대, 이동식 42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 5차 교통 안전기본계획에 의하면 등 계획 기간(2002년~

2006년)동안 3,81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⁵⁾

2004년 3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결과 97년~2001년간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539대의 설치 전·후 1년간, 설치지점 기준 2Km(전후방 1Km) 구간의 운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은 28.4%, 사망자수는 48.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다.⁶⁾

이러한 탁월한 효과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고(2004.10. 현재 고정식 2538대, 이동식510대) 향후 지속적인 설치가 예정되고 있다.

시스템 도입시 사전기술검사 및 인수검사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입후의 기술적 유지관리를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2004년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적 위탁을 실시하여 시스템 도입시 기술검사 및 인수검사, 사후 유지보수부문까지 공단에서 관리함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단속장비 자체의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청별로 각기 다른 업체의 제품이 설치되어 실제로는 제조업체의 유지보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COSMOS)

본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에는 일반신호, 전자신호, 실시간 신호가 있으나 여기서는 최신의 신호시스템인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실시간 신호시스템이란 먼저 도로에 차량 검지기를 매설하여 차량검지기 우를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교통상태를 측정하며 측정된 자료는 지역 제어기의 검지기 보드에서 수집되어 지역 컴퓨터로 전송된다.

지역컴퓨터에서는 수집된 검지기 정보를 기본으로 해당주기의 교통상황에 가장 적합한 신호시간(주기, 현시)을 산정하여 중앙컴퓨터로 전송한다. 중앙컴퓨터에서는 각 그룹의 신호 주기를 확정, 연동방향을 결정하는 옵셋패턴을 산정하고 비중요교차로에서 운영될 신호계획을 결정하여 다시 지역 컴퓨터로 전송하고 수집자료, 제어변수, TOD 신호계획 등을 저장 관리한다.

지역컴퓨터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신호 시간(주기, 현시, 옵셋)을 각 지역제어기로 전송하고 지역제어기는 그 명령에 따라 신호기를 구동한다.⁷⁾

이러한 신호시스템은 1997년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주요 교차로61개소에 설치되어 시험 운용한 결과 종전보다 약11.4% 정도의

5) 강정규, 교통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2, p. 26

6) 경찰청, 경찰백서, 2004.

7) 서울지방경찰청, ITS실무편람, 2003, p. 122

소통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12월말 현재 총 82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⁸⁾

앞으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는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방식이 전국 표준제어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실시간 신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므로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주체를 확실시하고, 교통신호관련 담당경찰관들의 전문성제고도 반드시 필요하다.

(3)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교통 소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전달매체를 이용,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통정보센터'는 2003년 현재 서울과 주요 대도시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현장의 신호기, 검지기, CCTV 등과 첨단 전산장비를 연계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흐름을 조정함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⁹⁾

서울경찰청의 경우는 교통정보제공과 교통관리 시스템의 통합운영체계인 '종합교통

'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교통지령실, 교통관리시스템, 교통정보서비스 시스템, 방송실 및 견학실, 교통정보 상황판 구성으로 되어있다.

시스템운영을 위해 교통정보를 수집(전자 및 신신호시스템, CCTV, 교통경찰관, 교통통신원 등)하고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전자지도 구축, 교통정보 관리 도로망 구성) 교통정보를 제공(언론 매체에 제공, 전화안내, ARS, 인터넷, FM부가방송에 제공 등)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부문

경찰청 주관 별도의 연구개발 부문은 없었으며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수행한 신신호 시스템 관련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공단 자체과제로 무인교통단속시스템관련 연구도 이루어졌다.

3) 기반조성사업부문

경찰청 소관시스템이 향후 타부처 추진 시스템들과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표준으로의 확립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소관ITS사업의 홍보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나 아직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사업이다. 특히 교통분야는 지방자치 단체와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호협력하고 보조를 맞추는 노력 및 장구가 필요하다.

4) 전문인력의 필요

1)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

경찰이 담당하는 ITS 전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그에 수반한 연구개발, 인력, 예산 등의 종합계획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경찰자체의 ITS종합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2)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필요

앞으로 설치되는 첨단 시스템들은 그 설치 고유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통계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인단속장비의 경우 본래 단속목적수행 이외에도 각종 통행정보, 교통흐름 정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조 필요

ITS분야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사업자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V. 경찰 ITS 추진관련 몇 가지 제언

지금까지 ITS 일반, 우리나라의 ITS 기본계획, 경찰의 ITS 서비스 시스템, 경찰의 ITS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ITS 초기단계로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려우나 ITS 분야중 경찰서비스 분야는 비교적 많은 추진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단속 시스템이 정착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도 점차 대상지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도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9) 경찰청, 경찰백서, 2004.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ITS 분야가 아직 본격적인 성장·확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단계임을 감안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찰 ITS분야에 있어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TS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ITS 관련법(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국가 계획(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상 경찰은 ITS 구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ITS사업은 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지방경찰청에서 추진되는 ITS 관련 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ITS 관련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2001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장기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 및 관리가 필요하고,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전담인력의 확보 또한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를 일반 경찰관에게 관리토록 하는 것은 ITS시스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0) 이시복, 경찰의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전략, 치안논총, 치안연구소, 2003. p.426

2. 안정적인 ITS 예산의 확보

ITS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소요예산의 꾸준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 교통신호기,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 등의 ITS 관련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나 경찰청 추진의 ITS분야 시스템 구축사업,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등에 안정적인 예산투입을 위해서는 상기 법률에 ITS관련 별도의 세출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¹⁰⁾

그리고 상기 법률이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폐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찰청 담당의 ITS 관련 예산의 확보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경찰청 소관 ITS종합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3.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운영관련

2004년 10월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 교통장비 2538대,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510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운전자의 설치장소 인지로 인한 단속율 저하, 무인단속장비 설치지점 예고 또는 탐지 장비의 출현 등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무력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단속

장비의 노출 또는 예고는 단속장비 주변에서는 준법운행을 하지만 설치지점을 통과하기 바쁘게 다시 과속하는 운전행태를 조장할 우려도 크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탐지 장비에 대해 불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최근 텔레메틱스 산업협회에서는 경찰청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용되지 않을 시는 헌법소원을 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¹¹⁾

앞으로는 무인단속 장비의 단순 양적인 증설보다는 무인단속장비의 비노출 설치로 인한 예방효과의 극대화,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2003년 현재 전국15개의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30개의 교통 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전국적인 교통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통정보는 경찰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수집되므로 향후 교통 정보의 전국적 통합 및 가공을 통한 제공의 과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준공공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지만 그 이전 단계라도 교통정보

센터의 수집정보가 모든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최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별도로 수집해 이용하고 있는 교통정보를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기관에서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국의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¹²⁾

■ 참 고 문 헌

- 원제무, 오영태, 황준환. 2003, 첨단교통론, 한울아카데미
- 이시복. 2003, 경찰의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전략, 치안연구소
- 김영찬. 2003,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운용방안, 치안연구소
- 경찰청. 2004, 경찰백서, 경찰청
- 경찰청. 2002, 도로교통안전백서, 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2003, ITS 실무편람, 서울지방경찰청
- 이철기. 2004, 교통정보수집체계, 아주대학교 ITS대학원
- 강정규. 2002, 교통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관한연구, 치안연구소
- 이승주. 200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중장기 세출방안, 치안연구소
- 백인섭. 2004, ITS아키텍쳐 개론, 아주대학교 ITS 대학원
- 건설교통부. 2000, 국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
- http://www.itskorea.or.kr/korean/its/its_con.asp(ITS 코리아),
- <http://www.spatic.go.kr/newsite/index.php>(서울지방경찰청)

법제동향(치안연구소 운영계)

법 제 동 향

법률 제7189호 (2004. 3. 12 공포)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 법률

1. 개정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는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3호).

라. 국회의 의원정수를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법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

마.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 후보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 실적을 추가함(법 제49조 제4항제4호).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투표안내문 발송시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함께 발송하도록 함(법 제49조제13항 신설).

사.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형 인쇄물의 직접 제공,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아.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2호 신설).

자.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등이 개최 하던 연설회를 폐지하도록 함(법 제75조 내지 제78조 삭제).

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법 제82조의4, 제82조의5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법 제86조제3항 신설).

타. 1회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법 제189조).

거. 경미한 금품수수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법 제261조제5항 신설).

너.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2조의3).

더. 종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263조제1항).

러.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퀄리티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0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190호 (2004. 3. 12 공포)

▶ 정당법증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두던 법정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함(법 제3조).

나. 현행 서면에 의한 입당·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당·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제23조 및 제29조의2).

다. 정당에 들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중앙당의 경우 종전 150인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도당의 경우 최대 5인으로 제한하도록 함(법 제30조의2제1항).

라.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마. 정당은 종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

바.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투·개표사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6 신설).

사.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에서 소요·교란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 등과 관련하여 연설, 방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7191호 (2004. 3. 12 공포)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

1. 개정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 이상 지출은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제4항).

나. 대통령 선거경선 예비후보자와 당대표 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 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함(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6조의5).

라.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법 제22조의3).

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법 제22조의4).

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 선거경선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 규정을 둠(법 제33조의2).

차.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법

제33조의4제2항).

행정자치부령 제225호 (2004. 3. 22 공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5급 4인과 6급 2인을 증원하는 대신 7급 6인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됨에 따라 경무기획국에 있는 기획과의 명칭을 혁신기획과로 바꾸고, 혁신기획과장의 분장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194호 (2004. 3. 22 공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

1. 개정이유

개인과 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개인과 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인과외교습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함(법 제2조제3호).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고, 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법 제14조의2제1항·제7항).

다. 개인과외교습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2제6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196호 (2004. 3. 22 공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개정이유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조).

나.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6조).

다. 신고자 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의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을 허용하도록 함(법 제8조).

라.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 보호 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마.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하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 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 하도록 함(법 제11조).

사. 판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수강명령, 특정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다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아.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함(법 제22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201호 (2004. 3. 22 공포)

▶ 住民登録法中改正法律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또는 재난 등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민등록관련 제반사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의견제시자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진위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탈세, 환경오염의 확산, 자동차의 성능저하, 석유유통질서 교란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과 저장·운송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대집행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와 구분하여 허용이 되는 품질보정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등 유사석유제품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212호 (2004. 3. 22 공포)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 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 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86호 (2004. 5. 10 공포)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 대상 가운데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은 연 2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매분기 또는 매월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행정발전 유공자들의 특별승진이 제때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27호 (2004. 5. 10 공포)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8386호, 2004. 5. 10.)되어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 가운데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특별승진시기가 연 2회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또는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져 있는 특별승진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요소 가운데 포상점수는 상과 별의 점수를 상계한 후 그 점수의 3분의 1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3분의 2를 반영하도록 하여 그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근무성적평정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포상점수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61호 (2004. 4. 6 공포)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령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9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종전의 2월에서 6월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64호 (2004. 4. 10 공포)

▶ 실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1. 제정이유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실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7062호, 2004. 1. 16. 공포, 2004. 4.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도시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충청북도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영 제7조).

나. 주변지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주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9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실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업무의 종류를, 건축허가·도시계획결정 및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으로 정함(영 제12조).

라.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중 주변지역의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가화조정구역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함(영 제14조).

마. 실행정수도건설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로서 공급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69호 (2004. 4. 19 공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6995호, 2003. 12. 11. 공포, 2004. 3.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2004. 4. 20 공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증개정령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관장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법률 제6976호, 2003. 9. 29. 공포, 2004. 3. 30. 시행됨에 따라, 다른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액화석유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지역을 관장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독하는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지역을 관장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판매지역의 준수여부 및 공급자의무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후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종전에는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식품점업체를 하는 자로 하여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의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되도록 함(제49조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가 안전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으로 정함(제8조 제2항 및 별표 5의2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중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 또는

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오발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별표 3 제1호나목(7) 신설).

마.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가스용품을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별표 11 제1호가목(4)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75호 (2004. 4. 24 공포)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296호, 2004. 2. 25. 공포, 시행)으로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을 이를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고속철도 운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수당을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11조의3제1항).

나.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 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액의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7).

다. 고속철도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에게는 월 48만원, 고속철도 열차의 안전운행 관련 장치를 취급하는 승무원에게는 월 15만원의 고속철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1).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교류임용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1).

마. 재외근무수당을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 그리스·헝가리·체코·폴란드 및 호주를 추가함(영 별표 1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8381호 (2004. 4. 24 공포)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가 사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간행물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전에 유통한 때에는 그 유해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16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나 소속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도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연령을 속이거나 청소년보호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등으로 구체화 함(영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때에는 정기간행물의 종류 및 연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영 제40조 제1항 및 별표 6 신설).

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영 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제550호 (2004. 4. 26 공포)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1. 제정이유

소속과 업무내용이 다양한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범죄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집무상의 준칙과 각종 서식을 정하여 그 직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특정사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법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 안에서 내란죄, 외환죄, 관세법위반죄, 조세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반기별로 단속계획 및 단속실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4조).

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함(제70조).

마.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제85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부령 제8호 (2004. 5. 21 공포)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종사자 등이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6995호, 2003. 12. 11 공포, 2004. 3.

12.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증 법인이 설치·운영하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신고하는 때에 휴·폐지 의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부령 제9호 (2003. 5. 21 공포)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99호, 2004. 1. 20. 공포, 2004. 1. 20.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그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390호 (2004. 5. 24 공포)

▶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 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392호 (2004. 5. 24 공포)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 인사위원회로, 민방위·재난관련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등 부처간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업무를 삭제하고, 재난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을 신설함(영제6조의4 신설 및 영제16조 삭제).

나.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인사·시험·훈련관리 등의 업무를 삭제하고, 의정관실을 의정관리국으로 개편하여 의정·상훈·공무원연금

및 복무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영 제3조, 영제5조의2 삭제 및 영제10조 신설).

다. 전자정부 추진업무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기능을 이관받아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 추진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기능을 보강함(영제11조).

라.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각각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 8인(4급 1, 5급 2, 6급 1, 기능10급 3, 연구사 1)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중 일부 직급을 조정(4·5급 5, 5급 -3, 6급 2, 연구관 2, 연구사 -2, 기능10급 -4)함(영제5장, 영제6장 및 별표 3).

마. 인사관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210인(차관급 2, 2·3급 2, 3·4급 1, 4급 8, 4·5급 8, 5급 42, 6급 53, 7급 18, 8급 2, 기능8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51, 1급상당 4, 3급상당 1, 5급상당 3,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 6급상당 1, 7급상당 3, 계약직 교수요원 3)을 중앙인사 위원회로 이체함(별표 1 및 별표 3).

바. 민방위·재난관련 집행업무가 소방 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소방방재청으로 이체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제229호 (2004. 5. 28 공포)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소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2004. 4. 24.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제2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소방박물관은 소방장비 등의 변천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전시하도록 함(제4조).

다.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차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 대상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제6조제2항 및 별표 3).

라.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2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31호 (2004. 5. 29 공포)

▶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등 직제 시행 규칙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1,100인(경사 203인, 경장 414인, 순경 483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2004. 5. 29 공포)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403호, 2004. 5. 29.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를 추가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내에서 승차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지한 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일간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403호 (2004. 5. 29 공포)

▶ 도로교통법시행령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내에서 승차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지한 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415호 (2004. 6. 5 공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중개정령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1. 29. 공포·시행)되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 장애인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해자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 제외함(현행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나. 근로자의 개념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영제4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법관·검사·경호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으로 축소하고 그 외의 직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며, 새롭게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급격한 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순차적인 공개채용비율을 정함(영제21조제2항 신설, 부칙 제5조 및 별표 1).

라.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영제27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 3호, 제 4조 제 4호, 제 4조의 2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16호 (2004. 6. 11 공포)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영 제5조제1항 신설).

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영 제31조 제2항제1호).

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정함(영 제35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영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부령제97호 (2004. 6. 12 공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131호, 2004. 1.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폐업후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고도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건전한 비디오 감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청실의 경우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이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함(안 별표 2 제1호가목).

다.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장의 경우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청소년게임물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

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등의 경우에는 성인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등의 경우보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함(안 별표 3 제2호마목).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공포)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을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복무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연가일수의 축소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4조의2 신설).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3 신설).

다.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토요일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2일 축소 조정함(영 제9조, 제13조, 제15조 및 부칙 제2항).

라.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함(영 별표 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50호 (2004. 6. 29 공포)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증개정령

1. 개정이유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을 각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하도록 하고, 경력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때에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3조제3항).

나.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영 제7조).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월봉급액과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60호 (2004. 6. 29 공포)

▶ 의료급여법시행령증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개시일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로 하여 실질적인 의료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입원에서 외래 및 약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수급권자가 6개월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67호 (2004. 6. 29 공포)

▶ 주차장법시행령증개정령

1. 제안이유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7055호, 2003. 12. 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제도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중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영 제2조 신설).

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기준과 그 등록취소기준 등을 정함(영 제12조의6 내지 제12조의9 신설).

다.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영화관·전시장 및 예식장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영 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68호 (2004. 6. 29 공포)

▶ 항공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024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에 외자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구역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당해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공항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영 제10조제5호 신설).

나.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영 제16조제3항 신설).

다.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항공기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영 제42조의2 신설).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통상의 소음부담금에 그 부담금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제3항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제240호 (2004. 7. 7 공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1.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제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건축물 등의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방화관리자의 선임기간을 정함(제14조제1항).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연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제408호 (2004. 8. 6 공포)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이용의 효율화 및 쾌적화를 위하여 굴절버스를 도입·운행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하던 것을 30톤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제수준으로 강화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의 상당수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재고로 쌓이게 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의 시행을 2005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05호 (2004. 7. 30 공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42호, 2004.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및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자의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추가함(영 제23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조치를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요청 등으로 정함(영 제23조의3 신설).

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자 등으로 정함(영 제23조의4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03호 (2004. 7. 30 공포)

▶아동복지법시행령증개정령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43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지원배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영 제1조의2 및 제1조의4 신설).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이행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영제1조의6 신설).

다. 위원회의 심의안전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아동정책 실무 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의7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종사자 수를 규정함(영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월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제292호 (2004. 7. 30 공포)

▶아동복지법시행규칙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43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아동복지 시설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동 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의 기준을 정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현재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97호 (2004. 7. 30 공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119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종류를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집단파돌림 등의 행위로 정함(영 제2조).

나. 시·도교육청에 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장학관 1인,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및 중·고등학교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5조).

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운영,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영 제6조 내지 제8조).

라. 학교에 두어야 하는 학교폭력 상담실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영 제10조).

마. 학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11조).

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영 제13조 내지 제16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령제155호 (2004. 7. 30 공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개정령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139호, 2004. 1. 29. 공포)됨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방법·절차,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보호조치에 관하여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암호기술을 이용한 보호조치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 등을 정함(제3조의2 신설).

나.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

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자로 정함(제3조의5 신설).

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전항목, 이전받는 자, 이전목적 및 방법 등을 정함(제11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93호 (2004. 7. 29 공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지방공사·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2조).

나. 공공기관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정보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기록물 등록대장·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시킨 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영 제14조제1항).

마.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바. 정보공개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영 제20조제2항).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제245호 (2004. 7. 29 공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3호, 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및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서식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법 및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제241호 (2004. 7. 23 공포)

▶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 행위에 대한 규정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범위를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공정·추출공정 등의 생산공정으로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로 정함(제1조의3 신설).

나. 보세구역안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첨가제 또는 동일 유정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품질검사기관에 그 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다.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 상한선을 1리터당 0.2원에서 0.3원으로 조정하여 누적되는 검사수수료의 적자를 개선하도록 함(제25조 제2항제1호).

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의 보고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보고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품질검사소로 변경함(별표5).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473호(2004. 7. 20 공포)

▶ 석유사업법시행령증개정령

1. 제안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 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12호(2004. 8. 7 공포)

▶ 도시철도법시행령증개정령

1. 개정이유

자동차선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게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도시철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차량을 신규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등록세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조정함(영 별표 2 제1호가목(1)(나) 및 (다)).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9)).

다. 종전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보철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의 (나) 및 (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515호(2004. 8. 10 공포)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증개정령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168호, 2004. 2. 9. 공포, 2004. 8. 10. 시행)되어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廢水無妨流)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허가 기준 및 허가 조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분리·집수시설,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허가 기준을 정함(영제2조제8항 제3호 신설).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을 위하여 폐수가 차단(遮斷), 저류(貯留)시설로 유입될 경우 이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의 부착 등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의 허가조건을 정함(영

제3조의2 신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유출.누출계수를 정하는 등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17조 및 제19조의2 신설).

라.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영 제50조제1항제25호의2 내지 제25호의4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령 제162호 (2004. 8. 11 공포)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동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협회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능력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도록 하는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그 절차를 정함(제9조의3 신설).

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종합병원을 제외하여 종합병원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책임을 강화함(제15조제2항제4호의2).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건설폐기물은 종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감염성폐기물은 종전 3일 이내에서 냉동보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2일 이내로 정하는 등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제19조의2제2호 및 제3호).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동시설에 대한 검사시판을 정함(제23조제1항라목 및 제3항제4호 신설).

마.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측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바.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에 추가하는 한편, 멀균.분쇄한 감염성폐기물의 잔재물을 반드시 소각한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도록 하는 등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조정함(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 신설 및 별표 4 제7호).

사.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유해한 사료로 인한 동물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함(별표 4 제3호라목(6) 신설).

아. 감염성폐기물 소집·운반업의 협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2대, 법인의 경우에는 3대 이상 갖추도록 하던 것을 5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함(별표 6제1호마목(1)).

자. 종전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하던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별도로 정하고, 강화된 기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별표 8 제2호가목(1)(가)⑤⑥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20호 (2004. 8. 17 공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증개정령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67호, 2003. 8. 16. 공포, 2004. 8. 17. 시행)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고용허가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로 인한 제도적 혼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추천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로서 고용허가제의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업체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화 50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연수제에 의한 산업연수생이 함께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우상의 불평등 및 관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추천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로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업체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산업연수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동 사항을 외국인근로자외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연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여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24조의3).

다. 종전에는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자가
연수취업(E-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격검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함(현행 제24조의5제1항제1호 삭제).

라.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류자격 내항선원(E-10)을 신설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분류함(영 별표
1).

마.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의 가사보조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가사보조인에게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제557호 (2004. 8. 23 공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20호, 2004. 8. 17, 공포·시행)되어
내항선원의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이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항선원(E-10)의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내항선원(E-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2호).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호
및 제2호).

다. 종전에는 출입국을 한 자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입국을 한 자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고용하였던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75조).

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별표 1).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33호 (2004. 8. 30 공포)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여 해양경찰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
경찰학교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42호 (2004. 9. 9 공포)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초등학교건물의 내부마감재료는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그 층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제278호 (2004. 9. 10 공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공유수면에서 바다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하여 모래채취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장
안벽(艦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조선용 선가대
(船架臺)의 설치를 위한 요율과 동일하게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조정함(별표 2 제2호).

나. 공유수면에서 바다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되, 배타적 경제수역 등 모래고시가격이 없는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계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함(별표 2 제4호가목).

다. 바다모래의 채취 등이 어장·어항 등의 준설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조정하되, 이 경우는 공익목적도 갖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점·사용료의 인상을보다 낮게 조정함(별표 2 제4호나목).

라.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의 경우에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토지가격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되, 어장·어항 등의 준설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토지가격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함(별표 2 제7호).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44호(2004. 9. 11 공포)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1. 제정이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74호, 2004. 3. 5. 공포,

2004. 9. 6. 시행)됨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진상조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관련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는 행정과·조사총괄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회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및 제14조).

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진상조사 신청서 또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17조제1항).

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마.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제2항).

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상황, 피해의 발생원인 및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영 제25조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46호(2004. 9. 17 공포)

▶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7213호, 2004. 3. 22. 공포·시행)으로 새로운 방송매체인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개설하는 방송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중 일부 권한을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 전파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개설하는 방송국의 명칭을 지상파 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으로 함(영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호).

나. 이동전화의 통신을 중계하는 이동 중계국을 육상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민이나 연안여객선의 승객이 고품질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8호).

다.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을 2

이상 개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1부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신청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4조제2항 신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영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마.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중 전자파 강도·전자파흡수율의 측정기준 등의 고시 및 전파환경의 측정에 관한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하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공고 및 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함(영 제62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령제158호(2004. 9. 17 공포)

▶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46호, 2004. 9. 17. 공포·시행)되어 전자파강도측정 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이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면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의 세부기준의 고시도 전파연구소장이 하도록 하고,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개설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

방송보조국은 단순한 중계기능만을 수행하여 방송구역 등을 일반에 알릴 필요성이 적으므로 무선국 개설허가시 고시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제249호·해양수산부령제279호
(2004. 9. 21 공포)

▶ 경찰공무원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자경찰공무원의 임부복, 흑한근무복 하의 및 과학수사요원의 감식복 등을 새로 제작·보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품명의 급여품 및 대여품지급기준표를 고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제250호 (2004. 9. 21 공포)

▶ 경찰복제에관한규칙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자경찰공무원의 임부복, 흑한근무복 하의, 여름단화 및 여름기동화를 새로 제작·보급하기 위하여 그 제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나 근무장소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종전에는 경찰청장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지방경찰청 등 소속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기관장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50호 (2004. 9. 23 공포)

▶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증 개정령

1.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3호, 2004. 1. 29. 공포)되어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제한기준이 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서울특별시의 테헤란로를 추가하고 부산광역시의 사상로를 제외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주요도로의 범위를 조정함(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1).

나.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서는 주간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이하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야간 70데시벨 이하로 각각 정하고, 소음측정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騷音源) 방향으로 1·3.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하는 등 소음측정방법을 정함(영 제8조의3 및 별표 2 신설).

다.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나 제한통고 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들 수 있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동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0조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제252호 (2004. 9. 23 공포)

▶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증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3호, 2004. 1. 29. 공포)되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한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52호 (2004. 9. 23 공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시행령

1. 제안이유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196호, 2004. 3. 22. 공포, 2004. 9.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자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 정함(영 제2조).

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경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경우 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고로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53호 (2004. 9. 23 공포)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제안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212호, 2004. 3. 22. 공포, 2004. 9. 23. 시행)되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원시설의 입소자 및 상담소의 이용자들이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와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여성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권한과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17호 (2004. 9. 23 공포)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기술경쟁력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등의 직위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부총리 1인 신설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순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법 제12조제2항, 제19조의 2제1항·제3항·제6항, 제22조 및 제26조).

나.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2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함(법 제20조제3항 신설).

다. 국가혁신체제를 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로 하여금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掌하도록 함(법 제29조제1항 신설).

라.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기획·조정·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29조제2항 신설).

마.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국립중앙박물관장·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 제22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2월 이내에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251호 (2004. 9. 24 공포)

▶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1일 개칭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제18560호 (2004. 10. 8 공포)

▶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여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의 제고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발급방식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면수를 42면이던 것을 앞으로는 48면으로 함(영 제2조제2항).

나.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지금까지는 5년이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하되, 18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은 5년 이내로 함(영 제6조제1항).

다.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여권을 가지도록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지금까지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8세 미만인 자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도록 함(현행 제22조 삭제)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부령제11호 (2004년 10월 16일 공포)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등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3개 여성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25호 (2004.10.16 공포)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2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 104 결정)됨에 따라,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제 482조 제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26호 (2004. 10. 16 공포)

▶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서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영리범 및 상습범과 동일하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가중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법 제11조제1항)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인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 등에 관한 죄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마약관련 범죄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소지·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소지·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27호 (2004.10.16 공포)

▶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고 가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행 규정(제24조 단서)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86, 99헌바36(병합) 결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29호 (2004. 10.16 공포)

▶ 군사법원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규정(안 제242조제1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31호 (2004. 10. 16 공포)

▶ 인감증명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이주자 인감신고제도 개선(법 제3조제5항 신설)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말소를 신청함이 없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을 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에 재외국민의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재외국민이 된 후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감부활신고(법 제11조제3항 신설)

(1) 인감이 말소된 자가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인감이 말소된 자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법 제12조 제1항)

(1)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 읍·면·동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적 인감발급이 가능해짐.

(2) 이에 따라 현행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들이 시·군·구 및 읍·면·동 중의 어느 기관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특정의 발급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감증명 발급확인(법 제12조의2 신설)

(1)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2) 인감발급기관에 의한 인감발급사실의 확인으로 불법적 인감위조 등 인감사고를 통한 경제적 거래를 방지하여 일반 국민이 불의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40호 (2004. 10. 22 공포)

▶ 석유사업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 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경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 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 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제280호(2004. 10월. 29 공포)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60호, 2004. 1. 29. 공포·시행)가 개정되어 해양경찰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경찰 학교장의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또는 취업보호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경정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을 이에 따르도록 함(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나. 해양경찰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장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증명서 발급과 경위이상의 인사기록부본 및 경사이하의 인사기록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다.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통신 경과를 정보통신경과로 변경하고 직무내용도 각종 통신기기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로 새로이 규정함(제20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제9호)

라.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위이상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류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2항)

마. 신규채용에 의하여 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합정에만 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자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등 채용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초임해양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는 외근부서에 파출소 및 경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추가함(제32조)

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에 대한 우선순위선발기준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또는 취업보호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특수 기술능력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로 되어 있으나 이 기준을 다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일 자격자를 이중으로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 이를 합격자 결정기준에서 삭제함(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 경비함정의 대형화·고속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 해양분야 응시자격 요건을 5급이상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무도사범·경호분야 응시에 필요한 무도유단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 가운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없고 여러 관련단체들이 난립,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기준을 강화함(별표 3)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구분란 중 해양 분야 및 무도사범·경호 분야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제281호 (2004. 10. 29 공포)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 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60호, 2004. 1. 29. 공포, 시행)가 개정되어 해양경찰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양경찰학교장의 근무성적평정·승진심사 및 상·별 평가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점수 및 가점의 부여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학교 신설에 따라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대상자명부, 경력·교육훈련성적평정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 제20조, 제24조 제1항 및 제28조제2항)

나. 영 제38조제2호 본문 중 특별승진의 경우 경감까지 확대되고 단서 조항이 삭제(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340호, 2001. 8. 14.)됨에 따라 영 제38조제2호 단서를 규정한 제33조제1항을 삭제함(제33조제1항)

다.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경감이하에의 특별승진을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영 제37조제3항제7호 및 제38조

제7호가 이중규정으로 삭제(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340호, 2001. 8. 14.)됨에 따라 영 제38조제7호 단서를 규정한 제33조제3항을 삭제함(제33조제3항)

라. 영 제39조 본문 중 특별승진 시기가 연2회에서 수시로 개정(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6호)됨에 따라 제34조를 삭제함(제34조)

마. 경찰공무원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평정시 기본경력 평정점을 30점에서 32점으로, 초과경력 평정점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함(별표1 내지 별표4)

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따른 가점부여시 치안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장기교육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직무전문화교육 4주 이상 이수자에 대한 가점을 0.2점으로 통일하고,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점을 삭제하여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별표7)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포상평가 기준에 해양경찰학교장 표창(3점)을 신설하고, 대간첩대책본부장·관구사령관 표창 폐지, 통합방위본부장 표창을 신설하여 군 조직에 맞도록 하며, 경찰총장·고등경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 포상점수를 각각 1점씩 상향 조정하며, 표창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상점수는 상과 별의 점수를 상계한 후 그 점수의 3분의 1을 반영하던 것을 2분의 1을 반영하도록 함(부표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부표2증 해양경찰학교장의 상·별 점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도 5월 6일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56호 (2004.11.1 공포)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 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양이나 성능면에서 실제 총기와 거의 비슷하게 제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분기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분사기의 발사장치는 탄창을 장전하거나 화약을 사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로 장식이나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경우 그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1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부령제12호 (2004.11.5 공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2호, 2004. 3. 22. 공포, 2004. 9. 23. 시행)되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자활을 돋기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제2조)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시설중 일반지원시설은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원시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성매매피해자등이 자립·자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학업 중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단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마련(제5조 및 별표 2)

(1)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종사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 으로부터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3)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 성매매피해자등의 사회적응 및 자립·자활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제7조)

(1) 법 제8조제4항에서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퇴소 사유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동의서, 지원시설 입소요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키도록 함.

(3) 지원시설 입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놓음으로써 강제입소 등 입소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퇴소사유를 규정하여 놓음으로써 지원시설의 질서유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의료비의 지원범위를 정함(제10조)

(1) 법 제14조에서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에 관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등에게서 다수 발견되는 성병, 산부인과 질환, 정신질환, 피부질환 등의 치료항목에 대한 비용증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성매매피해자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와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소 동정(치안연구소 운영계)

① 2003년 연구사업실적

② 2004년 연구사업추진과제

③ 2004년 치안정책학술세미나 결과

2003년 연구사업 실적

연번	과 제 명	연 구 자	비 고
1	경찰관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선우섭(경희대 교수)	자체연구과제
2	경찰교육타운 조성에 따른 중장기 경찰 교육 수요변화 예측 연구	이재경(숙명여대 교수)	"
3	경찰 계급단계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신현기(한세대 교수)	"
4	경찰공무원 보직인사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강재상(경희대 교수)	"
5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지방간 경찰사무 배분과 경찰 조직 개편방안	한상우(한양대 교수)	"
6	자치경찰의 재원 확보 및 재정 조정·운영방안	김석태(경북대 교수)	"
7	국제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방안	원혜숙(인하대 교수)	"
8	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성돈(성균관대 교수)	"
9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경미범죄에 대한 체포권 발동을 중심으로)	심희기(연세대 교수)	"
10	범죄수사의 공정성 및 인권보장 방안 연구	서보학(경희대 교수)	"
11	영·미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이백철(경기대 교수)	"
12	프랑스·독일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허일태(동아대 교수)	"
13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학습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위험예측 그림문제를 중심으로)	박영욱(영산대 교수)	"
14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중·장기 세출방안	이승주(초당대 교수)	"
15	'범죄현장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상원(대구대 교수)	"
16	선진각국의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현(동국대 교수)	"
17	집단분쟁에 있어 경찰개입의 한계 및 자율질서적 집회시위 관리방안 연구	전광석(연세대 교수)	"
18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태명(카톨릭대 교수)	"

2004년 연구사업 추진과제

연번	과 제 명	연 구 자	비 고
19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역량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권경득(선문대 교수)	"
20	신용카드관련 범죄실태 분석 및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하태훈(고려대 교수)	"
21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 - 자치경찰 - 자치단체 - 지방의회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최종석(고려대 교수)	"
2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직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기준 및 승진·보직·인사교류방안	조경호(국민대 교수)	"
23	경찰 연구기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시립대 교수)	"
24	진압방식모 개선에 관한 연구	이순종(서울대 교수)	"
25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김연태(고려대 교수)	"
26	사이버상의對경찰 시민반응에 관한 연구	박성호(호남대 교수)	"
27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이민식(경기대 교수)	"
28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의 합리적 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연구과제	임준태(동국대 교수)	용역연구과제
29	경찰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박종구(광운대 교수)	"
30	경찰종합정보체계 구축완료에 따른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조재희 (광운대 교수)	"
31	범죄수사에서 최면수사기법의 활용 방안	김시업(경기대 교수)	"
32	사건현장 감식기법 연구	박기원(국과수 유전자담당)	"
33	참여국정의 질서규범 확산을 위한 경찰 역할 패러다임의 혁신모형	이상안(경찰대 교수)	"

연번	과 제 명	연 구 자	비 고
1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황정익(팀라대 교수)	자체연구과제
2	경찰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	김준모(건국대 교수)	"
3	형집행장 및 민사감치 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기석(대구대 교수)	"
4	치안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	김구(조선대 교수)	"
5	신증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강동욱(관동대 교수)	"
6	소년범 수사사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김재봉(한양대 교수)	"
7	수사절차상 진술녹화제 도입방안	이웅혁(경찰대 교수)	"
8	경찰수사제도 개선에 관한 전략적 방안 연구	표창원(경찰대 교수)	"
9	약물운전자 세부 처리방안	정희선(국과수 교수)	"
10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금기정(명지대 교수)	"
11	교통안전정책의 효과분석 및 대책	하태준(전남대 교수)	"
12	경찰 진압방패 개선·개발	우종룡(서울산업대 교수)	"
13	선진 각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연구(英, 美, 日, 싱가포르 중심으로)	이상수(서울시립대 교수)	"
14	「경찰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박인우(고려대 교수)	"
15	경찰경호시스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원(용인대 교수)	"
16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최응렬(계명대 교수)	용역연구과제
17	배심제, 참심제 도입에 따른 경찰 수사구조의 변화 연구	한인섭(서울대 교수)	"
18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양창수(서울대 교수)	"
19	자동차 대리운전의 현황과 그 적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조태제(한양대 교수)	"
20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활용방안 연구	이건(서울시립대 교수)	"
21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 분석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4년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결과

제21회 「인권보장과 국민중심의 경찰수사」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1. 30(火), 15:00~17:30,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20층)

● 주제 및 발표자

- 주제 : 인권보장과 국민중심의 경찰수사(서보학 경희대 교수)

● 사회 및 토론자

- 사회 : 신동운 서울대 교수
- 토론자 : 참여연대 김기식,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호택 등 4명

● 참관자 : 270명 (내부 220명, 외부 50명)

□ 행사내용

- 이번 세미나는 경찰관 및 각계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경찰수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및 수사전문방안을 강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인권보장과 국민중심의 경찰수사」라는 주제를 통하여,

- 인권을 보장하는 국민중심의 경찰수사가 되기 위한 방안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역설하면서
- 과다한 출석요구의 지양, 자백 강요, 임의 출석한 자를 긴급 체포하는 관행은 금지되어야 하며 인정신문 등의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필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먼저 있는 후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법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그것과 같게 제한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확대하고 자백강요 중심의 수사관행을 견제하며 이중수사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 수사실무의 양성과 수사참여 확대를 통해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수사경과제를 통해 수사경찰과 일반행정경찰의 분리로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또한, 경찰수사도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기보다는 공판중심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과 재판에의 국민 참여 시대를 맞아 경찰수사의 과학화가 시급하며
- 경찰의 특수수사기능을 강화하여 대형부패사건의 통제에 적극 가담하고 투명사회의 정착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에 경찰청 김윤환 수사과장은

-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과 경찰의 의식이 중요하며, 경찰수사는 수사 착수서부터 종결까지 책임의식과 진실 발견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프로경찰의 직업의식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며 수사관의 70시간이상 과다한 업무량으로부터 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수사관의 인권보장 여건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라 토론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치안정책연구

발행일 | 2004년 12월

발행인 | 류 정 선

발행처 | 치안연구소

④ 449-70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TEL: 031) 285-0813

인 쇄 | 대한문화사 (☎ 02) 2268-0458)

【비매품】

이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